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영옥 의원 외 21명

나. 의안번호 : 제2767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5. 26.

라. 회부일자 : 2025. 5. 29.

2. 제안사유

- 현재 어린이 통학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학로는 폭이 매우 좁고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간 내 통학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관리에
대한 규정을 신설 (안 제6조의2제4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교통법」,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5. 6. 3. ~ 6. 7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- 「보행안전법」 제10조에 근거하여 매년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자치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
-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,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함

1) 보행자전거과-7966(2025.6.5.) “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”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보행환경개선지구²⁾로 지정된 통학로³⁾의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시장이 통학로를 개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구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6조의2제4항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 대해서 어린이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통학로 개선 및 관리를 할

2)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(2025.6월 기준)

○ 추진근거

-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, 시행일 : '12. 8. 23.
- '걷는 도시, 서울' 종합계획('16.1.18. 서울시장 방침 제13호)
- 지정대상 : 생활안전지구, 보행유발지구, 전통문화지구, 대중교통지구,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

○ 지정현황

구분	'13~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	계
지정	10	4	9	21	9	10	8	4	3	78
해제	-	-	-	-	-	-	-	3	-	3
계	10	4	9	21	9	10	8	1	3	75

3)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5. "교육시설"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.

6. "**통학로**"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"어린이 보호구역"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. - 이하 생략 -

수 있도록 하고, 자치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하여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

- 동 조례 제6조의2제2항과 제3항4)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 차량속도 저감시설,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와 노상적치물, 옥외광고물 등을 적법하게 정비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

통학로 확폭 등 통학로 개선 및 관리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 없는 실정이며 통학로 개선사업은 대부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통학로를 개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 등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

- 다만, 동 조례 제6조제1항에서 “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가 없는 실

4)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

제6조의2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

- ① 시장은 어린이의 통행 빈도가 높은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, 서울특별시경찰청장(이하 “서울경찰청장”이라 한다)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, 횡단보도 및 교통섬,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,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. - 이하 생략 -

정으로 향후 어린이 안전확보가 필요한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적극 지정하여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로 개선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